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군검찰사무운영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서욱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·감독하였으나,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·감독에 따르게 됨에 따라 부대의 장이 지휘·감독권을 행사하였던 사항을 삭제 및 조정하고, 검찰관에서 군검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군사법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. . ~ . . .) 결과,

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

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2조의2의 제목 “(군검찰부의 권한 위탁)”을 “(군검찰단의 권한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군 본부”를 “육군, 해군 및 공군(이하 “각 군”이라 한다) 검찰단”으로, “제36조제3항”을 “제36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원심군사법원”을 “원심군사법원 또는 원심법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6조제5항”을 “법 제36조제7항”으로, “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의 보통검찰부”를 “국방부검찰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, “군사법경찰관”을 “군사법경찰관리”로, “군검찰부”를 “군검찰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”을 “국방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검찰관의 사무처리)”를 “(군검사의 사무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검찰관이”를 “군검사가”로, “검찰관의”를 “군검사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관의 직무를”을 “군검사의 직무를”로, “검찰관의 직무대행임”을 “군검사의 직무대행임”으로, “검찰관의 권한”

을 “군검사의 권한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검찰관의 체포·구속장소 감찰)”을 “(군검사의 체포·구속장소 감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검찰부장”을 “보통검찰부장”으로, “검찰관을”을 “군검사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, “부대의 장”을 “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해당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, “부대의 장”을 “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해당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부대의 장은 검찰관”을 “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소속 검찰단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각각 “군검사는”으로, 같은 항 중 “작성하여 체포·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해당 부대의 장에게 제출”을 “작성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7조제5항”을 “법 제232조의2제3항”으로,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지휘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”를 “지휘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”로, “지휘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

여야 한다”를 “지휘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영장 집행자”를 “영장을 집행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 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검찰관을”을 “군검사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통군사법원”을 “군사법원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관이”를 “군검사가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검찰관이”를 “군검사가”로, “검찰관에게”를 “군검사에게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검찰관은”을 각각 “군검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각각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찰관”을 각각 “군검사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찰관에게 인도하고 검찰관”을 “군검사에게 인도하고 군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검찰관의”를 “군검사의”로, “검찰관에게”를 “군검사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검찰관”을 각각 “군검사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, “보고하고,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”를 “보고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검찰관에게”를 “군검사에게”로, “검찰관의”를 “군검사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각각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29조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한다.

제31조를 삭제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검찰관은 보통군사법원”을 “군검사는 군사법원”으로,

“검찰관에게”를 “군검사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, “검찰관에게”를 “군검사에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한다.

제32조의2제1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, “보통군사법원”을 “군사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, “해당 부대의 장에게”를 “소속 검찰단장에게”로, “부대의 장은”을 “검찰단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각각 “군검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찰관에게”를 “군검사에게”로, “검찰관의”를 “군검사의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관과”를 “군검사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7조(관할관의 확인 조치) 법 제535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중 “검찰관이”를 “군검사가”로 한다.

②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”을 “국방부검찰단장·육군, 해군 및 공군 검찰단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”을 “국방부검찰단장·육군, 해군 및 공군 검찰단장”으로, “군검찰부 검찰관으로”를 “군검사로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군검찰부 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군 검찰부 검찰관은”을 “군검찰부 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군 검찰부 검찰관은”을 “군검찰부 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④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군검찰관이”을 “군검사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
“군검찰관을”을 “군검사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군사법원 검찰부”를 “군검찰부”로 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군검찰관과”를 “군검사와”로 한다.

제76조제1항 중 “군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군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97조 제2항 중 “군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134조제2항 중 “군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한다.

- ⑤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검찰관”을 각각 “군검사”로 한다.

-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군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한다.

- ⑦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각급 군법회의 관할관”을 “국방부검찰단장·육군, 해군 및 공군 검찰단장”으로 한다.

-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5항 중 “군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한다.

- 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군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한다.

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고등군사법원 검찰부”를 “고등검찰부”로 하고, 같은

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고등군사법원 검찰부”를 “고등검찰부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군사법원 검찰부”를 “군검찰부”로 한다.

⑪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군사법원의 검찰관을”을 “군검사를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검찰사무의 지휘·감독 등) ① 육군, 해군 및 공군(이하 “각 군”이라 한다) 참모총장 또는 그 명을 받은 보통검찰부가 설 치되어 있는 상급부대의 장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보통검찰부 가 설치되어 있는 예하부대(隸 下部隊)의 검찰관을 지휘·감독 한다.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 또 는 상급부대의 장은 소속 검찰 부장에게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② 검찰부장은 해당 군검찰부의 검찰관 중 선임검찰관으로 보 (補)한다. ③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(이하 “부대의 장”이 라 한다)은 검찰관의 직무를 직 접 수행하지 못한다.	<삭 제>
제2조의2(<u>군검찰부</u> 의 권한 위탁) ① <u>각군 본부</u> 고등검찰부는 「군사법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	제2조의2(<u>군검찰단</u> 의 권한 위탁) ① 육군, 해군 및 공군(이하 “각 군”이라 한다) 검찰단 ----- --- 제36조제4항 ----- -----

일부를 국방부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법 제50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집행지휘

② 법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의 보통검찰부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보통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조의3(중요 사건)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의 보통검찰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.

1. ~ 2. (생략)

3. 군판사, 검찰관, 군사법경찰관, 군사법원 직원 또는 군검찰부 직원이 피의자인 사건

4. (생략)

5. 범죄의 성질, 피의자의 지위,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-- 원심군사법원 또는 원심법원-----
--

<삭제>

제2조의3(중요 사건) 법 제36조제7항----- 국방부검찰단-----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군검사, 군사법경찰관리----- 군검찰단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

6. (생 략)

제3조(검찰관의 사무처리) ① 검찰관이 그 권한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검찰관의 이름으로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법 제42조에 따라 검찰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군법무관시보는 검찰관의 직무대행임을 표시하여 검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.

제4조(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)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조할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검찰관의 체포·구속장소 감찰) ① 검찰부장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매월 초에 피의자 체포·구속장소를 감찰할 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

----- 국방부장관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군검사의 사무처리) ① 군검사가 -----

----- 군검사의 -----
-----.

② ----- 군검사의 직무를 -----
-- 군검사의 직무대행임-----
--- 군검사의 권한-----
--.

제4조(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) 군검사는 -----

-----.

제6조(군검사의 체포·구속장소 감찰) ① 보통검찰부장-----

----- 군검사를 -----.

② ----- 군검사는 -----

고, 그 감찰 결과를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 검찰관은 법 제230조제2항에 따라 석방명령 또는 송치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부대의 장은 검찰관에게 해당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게 할 수 있다.

⑤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체포·구속장소를 감찰할 때에 징계받은 사람의 구금장소를 감찰할 수 있다.

제7조(검찰관의 체포·구속영장 청구) ① 검찰관은 체포·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체포·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고 체포·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해당

-----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해당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군검사는 -----
-----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해당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---.

④ -----
-----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소속 검찰단장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그 청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 군판사는 검찰관의 청구 사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체포·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군판사가 체포·구속영장을 발부하려는 경우에는 체포·구속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⑤ 군판사가 체포·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⑥ 검찰관은 군판사로부터 체포·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집행에 필요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(군사법경찰관의 체포·구속영장 신청) ①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·구속

제8조(군사법경찰관의 체포·구속영장 신청) ① 군검사는 -----

영장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
신청 이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
사하여 군판사에게 체포·구속
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하여야
한다.

② 검찰관은 체포·구속영장의
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
에는 체포·구속영장 청구서를
작성하여 체포·구속의 필요를
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해
당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
하며,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
정할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
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
여, 신청한 군사법경찰관에게
내주어야 한다.

제9조(체포·구속영장 재청구 등
의 제한) 제7조제5항 또는 제8
조제2항에 따라 체포·구속영
장의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
정을 받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
경찰관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
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
포·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
청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
적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

-----.

② 군검사는 -----

작성-----

-----.

제9조(체포·구속영장 재청구 등
의 제한) 법 제232조의2제3항 -

----- 군검사 -----

다.

제10조(재판관 등의 체포·구속절

차) ① 심판관 또는 군법무관
(군법무관시보를 포함한다)을
체포·구속하려는 경우에는 기
록과 증거물을 붙여 해당 군 본
부 법무실장을 거쳐 해당 군 참
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체포·구속영
장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의 승
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어야
한다.

제11조(체포·구속영장의 집행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체포·구속영
장을 집행하는 사람은 필요한
처분을 한 후 그 집행 결과를
지휘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
야 하며,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
에는 그 사유를 지휘자에게 지
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체포·구속영
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체포·
구속영장의 해당란에 체포·구
속한 일시·장소 및 영장 집행

--.

<삭 제>

제11조(체포·구속영장의 집행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지휘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
보고하여야 하며-----
----- 지휘하는 사람
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
다.

③ -----

----- 영장을 집

자의 성명·소속·직책 및 계급
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12조(체포·구속영장의 반환
등)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
관이 체포·구속영장을 집행하
지 아니하였거나 집행할 수 없
을 때에는 그 영장을 군판사에
게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사
법경찰관은 검찰관을 거쳐야 한
다.

② 군판사에게 반환된 체포·구
속영장은 보통군사법원에서 보
관한다.

③ (생략)

제13조(구속된 사람의 이감) ①
검찰관은 법 제126조(법 제246
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다)에 따라 구속된 사람을 다른
교도소로 이감하려는 경우에는
이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교도소
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감지휘서
에는 이감될 사람의 인적사항과
이감할 교도소명을 적고 검찰관
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행하는 사람-----
-----.

제12조(체포·구속영장의 반환
등) ① 군검사 -----

-----.
----- 군검사를 -----
--.

② -----
----- 군사법원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구속된 사람의 이감) ①
군검사는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군검사
가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) ① 검찰관은 법 제131조에 따른 청구를 하거나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제한, 주고 받을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열, 주고 받는 행위의 금지 또는 압수의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검찰관이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결정하거나 군사법원의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교도소장에게 그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문서로 명하여야 하며,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구속의 취소) ① 검찰관은 법 제133조에 따른 청구를 하거나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의 취소를 결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제14조(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) ① 군검사는 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군검사가 -----

----- 군검사에
게 -----.

제15조(구속의 취소) ① 군검사는

-----.

② (생략)

③ 법 제133조에 규정된 검찰관 외의 청구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검찰관은 구속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야 하며, 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.

제16조(보석) ① 검찰관은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른 보석허가의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.

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는 경우 석방된 사람이 거주할 지역의 군사법경찰관에게 그에 대한 관찰을 명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그에 대한 관찰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특별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군검사

--.

④ 군검사는 -----

--.

제16조(보석) ① 군검사는 -----

-----.

② 군검사는 -----

-----.

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관찰명령 또는 관찰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석방된 사람이 석방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찰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검찰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7조(구속의 집행정지) ① 검찰관은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검찰관은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야 하며, 법 제14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

-----.

③ -----

군검사-----
-----.

④ 군검사는 -----

-----.

제17조(구속의 집행정지) ① 군검사는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군검사는 -----

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8조(구속기간의 연장) ① 검찰

관은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
려는 경우에는 연장신청 이유를
적은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연
장에 필요한 자료를 붙여 해당
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
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
부대의 장은 그 신청서에 승인
여부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
다.

③ 군판사는 신청 이유와 붙여
진 자료를 심사하여 연장이 이
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
기간 연장허가서에 필요한 사항
과 연장기간을 적고 서명날인하
여야 하며, 신청이 이유 없다고
인정할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
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
검찰관에게 내주어야 한다.

④ 군사법경찰관은 구속기간의
연장을 허가받으려는 경우에는
검찰관을 거쳐야 한다.

제19조(긴급체포) ① 검찰관 또는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9조(긴급체포) ① 군검사 ----

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32조의3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와 긴급체포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체포된 현행범의 인도) ①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문(審問)하여 구속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검찰관은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21조(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) ① 법 제252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을 거쳐 관할 보통군

-----.

② -----
----- 군검사-----

-----.

제20조(체포된 현행범의 인도) ① ----- 군검사

-----.

② 군검사는 -----

--.

제21조(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) <삭 제>

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의 인적사항·죄명·구속일시 및 장소와 청구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 군사법경찰관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가 있으면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붙여 기록과 증거물을 보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검찰관에게 인도하고 검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⑤ 검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석방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.

제22조(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)

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 단서에 따라 검찰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

<삭 제>

③ -----

--- 군검사는 -----

-----.

④ -----

----- 군검사에게
인도하고 군검사-----
-----.

⑤ 군검사는 -----

-----.

제22조(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)

① -----
----- 군검사의 -----

----- 군검사에게 -----

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동의 요청을 받은 검찰관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동의요청서의 해당란에 적고 서명날인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내주어야 한다.

제23조(제3자의 출석요구)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에 따라 피의자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뜻과 피의사건명을 적고 서명날인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감정·통역 및 번역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위촉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4조(변사자 등의 검시) ① 검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라 검시(檢視)를 하였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 군검사는 -----

-----.

제23조(제3자의 출석요구) ① 군검사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군검사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변사자 등의 검시) ① 군검사는 -----

-----.

② -----

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찰관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,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264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붙여 그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, 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④ 검찰관은 검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⑤ 검찰관은 검시 결과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5조(고소권자의 지정) ① 법 제270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고소권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고소권자 지정신청서를

군검사-----
보고한다.

③ -----

----- 군검사에게

군검사의 -----
-----.

<삭 제>

⑤ 군검사는 -----

-----.

제25조(고소권자의 지정) ① ----

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검찰관은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고소권자 지정서에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의 인적사항, 고소할 사건명 및 지정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,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6조(배우자의 고소) 법 제271

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.

제27조(고소·고발에 대한 조치)

① 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거나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지휘받았을 때에는 2개

----- 군검사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군검사는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27조(고소·고발에 대한 조치)

① 군검사는 -----

-----.

② -----

월 내에 수사를 마쳐 수사기록
등을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.

제28조(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
속 보관) ① 검찰관은 구속된
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
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
을 지휘하여야 하며, 석방을 지
휘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석방
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검찰관은 법 제288조 단서에
따라 압수물을 환부하지 아니할
때에는 계속 보관의 결정을 하
여야 한다.

제29조(재정신청) ① 법 제301조
제1항에 따라 재정(裁定)을 신
청하려는 사람은 재정신청서를
작성하여 검찰관을 거쳐 해당
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
다.

② 법 제303조제1항제2호에 따
른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
찰부 검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
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하여야
한다.

제30조(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
청구 요청) ① 군사법경찰관이

---- 군검사-----.

제28조(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
속 보관) ① 군검사는 -----

-----.

② 군검사는 -----

-----.

<삭 제>

제30조(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
청구 요청) ① -----

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청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1조(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 조치)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2조(비상상고 제기의 청구) ① 보통검찰부 검찰관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된 사건 중 법 제492조에 따라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유를 붙여 그 기록을 고등검찰부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.

② 고등검찰부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유와 기록을 심사하여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적은 비상상고 제기 청구서와 기록을 검찰총장에

----- 군검사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32조(비상상고 제기의 청구) ① ----- 군검사는 군사법원-----

----- 군검사에게 -----
--.

② ----- 군검사는 -----

게 보내야 하며,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를 붙여 기록을 보통검찰부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.

③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한 고등검찰부 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2조의2(약식명령의 청구) ① 검찰관은 법 제501조의3에 따른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(公訴狀)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검찰관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.

제33조(사형집행의 정지) ① 검찰관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 제5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대의 장에게

----- 군검사에게
-----.

③ -----

----- 군검사-----

-----.

제32조의2(약식명령의 청구) ① 군검사는 -----

----- 군사법원-----
-----.

② 군검사는 -----

-----.

제33조(사형집행의 정지) ① 군검사는 -----

----- 소속 검찰단장에게 -

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, 해당 부대의 장은 소속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교도소장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 제5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4조(자유형집행의 정지) ① 검찰관은 법 제513조제1항 및 제514조제1항에 따라 자유형집행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검찰관은 법 제513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할 때에는 감호지휘서 또는 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감호의무자,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군병원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휘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검찰관의 지시를

검찰단장은

②

군검사

제34조(자유형집행의 정지) ① 군검사는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군검사는

④

군검사에게

군검사의

받아야 한다.

제35조(재산형 등의 집행) ① 검찰관은 법 제520조제1항에 따라 재산형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재산형집행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6조(몰수물의 처분) ① 검찰관은 법 제525조 및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공매·파괴·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내주었을 때에는 몰수물 처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처분조서에는 처분한 일시 및 장소, 처분한 몰수물, 처분 방법 및 이유, 처분 후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, 검찰관과 처분에 참여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 검찰관은 법 제526조제2항에 따라 몰수물의 대가를 내주었을 때에는 처분조서에 그 사실을 부기(附記)하여야 한다.

제37조(관할관의 확인 조치) 법 제535조에 따른 확인의 경우에

-----.

제35조(재산형 등의 집행) ① 군검사는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몰수물의 처분) ① 군검사는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군검사와 -----

-----.

③ 군검사는 -----

-----.

제37조(관할관의 확인 조치) 법 제535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이

는 제31조를 준용한다.

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
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
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법무담당관실	
연 락 처	(02) 748 - 6811